

#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官廳 題名記) 창작의 시대적 맥락

구슬아\*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 개관
  - 1. 창작 현황
  - 2. 장르적 원천
- III. 관청 제명기의 통시적 변화 양상
  - 1. 조선 전기: 새로운 인재상 확보와 계서적 질서 강화
  - 2. 조선 중기 이후: 기록의 재구축과 지방으로의 전환
- IV. 제명기 창작의 시대적 맥락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에 중앙조정과 지방의 관청(官廳)에서 제작된 제명기(題名記)를 대상으로 그 창작 전통과 경향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읽어내려는 시론(試論)이다. 사대부 관료들의 사적(私的) 연대인 계회(契會)와 달리, 제명기는 관청의 전·현임 근무자들의 공적 기록이자 관료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강조되는 자료로서 주목을 요한다.

조선 개국 이후부터 후기까지 창작된 제명기의 통시적 변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유제를 극복하고 『경국대전』으로 표상되는 조선적 정치질서의 성공적 이식을 위한 질서의식이 강조된다. 학업과 인품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 인재상을 서술함으로써 조선의 인선(人選)이 엄밀하고 정확함을 과시하는 한편, 이미 조선의 정치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특히 사대부 고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관료들이 하급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는 후인(後人)들의 역사적 평가를 엄중히 인식하며 왕화를 보좌한다면 훗날 승진을 통해 그것을 보상 받을 것이라고 독려함으로써 신진 관리들의 자기통제와 성장을 추동하는 계서적 질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병란을 거치며 인멸된 기록을 복구하고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한편 그 보수(補修)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중앙관청의 정비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방 통치로 시선이 전환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조정과의 관련 속에 수령들이 지방에서 조정의 교화를 온전히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사명감이 강조되어 있다. 조선 전기까지의 제명기 창작이 주로 해당 관청에 근무하게 된 개인들이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서의 제명록 제작은 향리가 축적해온 구안(舊案)의 관행을 전면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 통치의 준거를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제도적·본격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조선 후기의 제명기는 조선 전기와 중기 제명기의 창작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향이 현저하되, 창작의 주체와 수신 대상 모두 사대부에서 중인층으로 확대되었다.

제명기는 위계적 질서에 입각한 정명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각 개인이 정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다함으로써 정치적 질서가 완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명기는 제작 자체가 하나의 제도이자 문학적 결과물로서 조선이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산생될 수밖에 없었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제명록(題名錄), 제명기(題名記), 선생안(先生案), 관청(官廳), 계서(階序), 기록 구축, 정치 질서.

##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에 중앙조정 및 지방의 관청(官廳)에서 제작된 제명록(題名錄)에 주목하여, 서문(序文)의 성격을 띠는 제명기(題名記)를 분석함으로써 그 창작 전통과 경향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정치의 주체인 사대부들이 일찍부터 각종 결속 활동을 해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 말부터 기로회(耆老會), 동관계(同官契), 동갑계(同甲契) 등 사대부 관료들의 사적(私的) 모임이 결성되었고, 특히 조선 개국 이후에는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더욱 활발한 계회(契會)가 이루어져 왔다.<sup>1)</sup> 이러한 사적 계회는 사대부 관료 집단 내부의 다양한 인맥 구축망이자 문학적 성과의 장이 되었으며, 그 모임의 결과물이 각종 시집이나 계회도(契會圖)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윤진영(2003)은 계회를 통해 관료들이 단합된 동류의식과 인적 결속을 도모할 수 있었고 그것이 관료 사회에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하였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조선전기의 제명록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하였다. 비록 제명록을 각종 사적 성격의 계회도와 함께 혼용하여 사료적 측면에서 다룬 면이 없지 않지만, 각 관청에서 근무한 관원 명단인 제명록의 제작 전통이 고려 말부터 시작된 점, 조선 초기 대부분의 관청에서 제명록의 제작을 관행으로 삼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낸 의의가 있다.<sup>2)</sup>

신영주(2007)는 조선 전기에 사적 계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젊은 사람과 기존 훈구 세력의 대결 구도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혁신의 주체로서 각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낭관’이 연대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1) 관련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회 활동과 계회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이종목,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한국시가연구』 제9집, 한국시가학회, 2011; 채웅석, 『고려 중·후기 기로회와 개경 사대부 사회』, 『역사와 현실』 제79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홍선표,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제36집, 한국미술연구소, 2013.

2) 윤진영, 위의 논문, 2003, 47~48면.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권2 『京都 下』)의 <문직공서(文職公署)> 조에 제명기의 사례 몇 편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따르면, 관청의 지휘 책임자인 당상관들을 보좌하며 행정 실무를 주도하였던 핵심 세력인 육조(六曹)의 정랑(正郎: 정5품)이나 좌랑(佐郎: 정6품)들은 막 정치에 입문한 신진세력으로서, 현실참여에 대한 진취적 의기와 문학적·실무적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서의 자부심을 관련 시문에 강하게 드러내었다.<sup>3)</sup> 시문 창작의 주체 및 수신자에 주목하여 계획 관련 기록의 정치적 맥락<sup>4)</sup>과 관료 간 연대의식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듯 계획은 사대부 관료 간 사적 연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하여 그 모임의 결과물인 계획도는 우정(友情)이나 정의(情意)를 강조하려는 모임의 목적을 오래도록 참여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징표로서, 상호간의 변함없는 신의와 연대의식을 고양하고 지속하는데 일조하였다.<sup>5)</sup>

반면,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제명록은 조선시대 중앙조정 및 지방의 관청 상설 과정 및 전·현임 근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공식 기록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엄밀히 말하여 전임자와 현임자 간에는 신의나 우정과 같은 사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대신, 같은 관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관료로서의 집단적·위계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명록은 각 관청에 재직했던 관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과년(登科年), 부임한 날짜와 이임한 날짜, 관력(官歷) 등의 간략한 인적 사항과 사적을 적어 둔 자료로서, ‘선생안(先生案)’이라고도 한다.<sup>6)</sup> 이러한 공식적 창작

3) 신영주, 앞의 논문, 62~65면.

4) 신영주는 계획가 상호연대와 부조를 위해 생겨났으므로 상호간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그 인적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좌목을 만들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좌목에 계획들의 성명, 관력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 사마시와 대과의 급제 연도, 부친의 관력, 형제 관계 등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관료사회에서 한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인적 정보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계획의 인물을 통해 당사자간 동질성과 연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신영주, 위의 논문, 71~72면.

5) 계획가 비공식적 회합이었다는 점은 윤진영(2003)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관료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료 상호간의 관계 설정을 위해 계획라는 사적 회합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료들은 상호간 강한 동류의식을 가지는 한편, 자신이 속한 집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친목과 결속, 그리고 상부상조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윤진영, 위의 논문, 26면.

6) “題名有記, 尙矣. 郡邑有圖誌, 官曹有載籍, 悉書事跡人氏, 以爲後考, 韓昌黎藍田丞廳壁記, 司

목적으로 인해 제명록은 영구히 축적·보관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sup>7)</sup> 제책(製冊)시 책의 크기가 매우 크고 단정한 글씨로 정사(淨寫)한 뒤 장황을 정성스럽게 하고 상자 등에 넣어 지속적으로 보관·점검하였다.<sup>8)</sup> 이러한 형태적 사항은 열람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중압감 내지 경외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처음부터 서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돌이나 비석, 청사(廳舍)의 벽 등에 관리들의 성명을 새겨왔으나 마모로 인해 전승이 용이하지 않자 서책의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즉 제명록 제작의 1차적 목적은 기록의 축적과 전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명록 제작의 목적과 의도는 보통 해당 관청의 관직을 역임한 전·현직 관료가 지은 서발(序跋)이나 기문(記文)에 잘 드러나 있다. 당연히 계획 관련 기록물보다는 각 관청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내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명록을 비롯하여 그 서발과 기문은 이와 같은 기록적·공적 성격으로 인해 ‘문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인지, 일찍이 문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제명록, 특히 그 서발이나 기문이 국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치의 주체인 사대부들이 직접 정치적 목적에서 창작한 공적 작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새로운 문학적 조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래 공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 외에도 유산이나 유람을 함께 한 사람들

馬公諫院題名記, 卽其事也。吾東方文獻, 無譏於中朝, 上自臺閣, 下至庶司, 備錄前任人名氏及其遷除歲月, 翻案瞭然, 謂之先生案, 皆所以備文獻之徵, 謹遠忘之患也。”(鄭士龍, <書活人署契軸後>, 『湖陰雜稿』 卷8)

7) 윤진영, 『藏書閣 所藏의 『館伴題名帖』』, 『장서각』 제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169면.  
 8) 일례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초계문신제명록(抄啓文臣題名錄)』은 책 크기가 '50.9×36.4 cm'이며, 대부분의 제명기가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 『경상도영주제명록(慶尙道營主題名錄)』의 경우 무게만 약 9kg에 이르는 대형 서책으로, 정사하여 네 군데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였다.(이수진, 『중보 경상도선생안』, 국학진흥원, 2005, 35면) 또한 『여지도서』에 따르면 당상과 낭청의 선생안 및 그것을 보관하는 궤짝을 담당하는 관리가 별도로 있었으며, 담당 관리가 이를 종종 살펴보아 장황이나 궤짝을 보수하였다고 하였다. 당상과 낭청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이방서리가 선생안을 뒷사람에게 보인 뒤, 서사서리(書寫書吏)를 시켜 직함과 임명 일자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一. 堂郎先生案及所盛櫃子, 次知而先生案則 觀勢改粧, 櫃子則隨毀修補. … 一. 堂郎出官, 則吏房書吏入鑑先生案後, 書寫書吏書職卹除授日子.” (<吏房>, 『京兆府誌』 補遺, 『輿地圖書』)  
 9) 제명기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인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서 “丞廳故有記, 壞漏, 汚不可讀. 斯立, 易桷與瓦, 墁治壁, 悉書前任人名氏.”라 하여 청사의 벽에 전임관들의 성명을 기록하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의 명단과 날짜를 기록하는 등 사적 모임의 기록 역시 ‘제명’이라 불리기도 하지만,<sup>10)</sup>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적 성격의 제명 전통은 논외로 하고 조선 시대 중앙조정 및 지방의 상설관청에서 제작한 공식적 기록으로서의 제명록에 대한 서발과 기문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관료들의 명단인 제명록과의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그 서발과 기문을 ‘제명기(題名記)’라 통칭하도록 하겠다.

## II.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 개관

### 1. 창작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목적에서 창작된 제명기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먼저 조선의 전 시기에 걸친 관청 제명기의 제작 현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제명록’, ‘제명기’, ‘선생안’ 등의 명칭을 지닌 작품의 제목을 일괄 검색하고 이를 창작 시대순에 따라 열거하였다.<sup>11)</sup> 이 과정에서 사적 계획의 제명기<sup>12)</sup>나 도감(都監) 제명기와 같이 상설 관청이 아닌 일회성에 그치는 작품은 일단 제외하였다. 또한 표1에는 중앙 관청의 제명기를, 표2에는 지방 관청의 제명기를 분리하여 열거하였다.

10) “題名者，紀識登覽尋訪之歲月，與其同遊之人也。其敘事，欲簡而瞻，其秉筆，欲健而嚴，獨昌黎集有之，亦文之一體也。… 今制太學每三歲，則樹甲科題名於持敬門內，而閣部以下各樹題名碑於署內，以紀其姓名履歷云。”(朱荃宰, <題名>, 『文通』 卷12)

11) 창작시기는 제명기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용에 언급된 간지(干支)나 저자의 생몰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바 저자가 해당 관직에서 활동한 시기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비정하였다.

12) 한편, 조선 중기로 갈수록 문인그룹이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현상에 대해, 職品을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관료 조직 내부에 사적 인간관계가 學問의 권위를 명분으로 하여 점차 인정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송용섭, 『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23~224면. 다만 본고에서는 사적 계획이나 사적 연대가 아닌 제도로서의 제명록 창작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그러한 현상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표1> 중앙 관청 제명기

번호	제목	작자	창작시기	출전
1	議政府舍人舍題名記	李克堪	1454년 이후 추정	『신증동국여지승람』 京都下, <文職公署>
2	議政府檢詳司題名記	李克堪	미상	『신증동국여지승람』
3	工曹郎廳題名記	徐居正	1452년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四佳集』
4	司諫院題名記	徐居正	1457년	『신증동국여지승람』, 『四佳集』
5	五衛都揚府題名記	徐居正	1466년	『신증동국여지승람』, 『四佳集』
6	司憲府題名記	徐居正	147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四佳集』
7	登俊試題名記	金守溫	1466년	『拭疣集』
8	訓練院權知先生案記	金守溫	1467년 전후	『拭疣集』
9	司僕將先生案序	李陸	1470년 전후	『靑坡集』
10	司諫院題名軸文	洪貴達	미상	『虛白亭文集』
11	承政院題名記	柳義孫	144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2	承文院題名記	李淑斌	1466년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13	內乘題名記	李淑斌	1469년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
14	奉常寺題名記	尹子滌	미상	『신증동국여지승람』
15	宗簿寺題名記	尹子滌	1468년 전후	『신증동국여지승람』
16	義禁府題名記	柳誠源	미상	『신증동국여지승람』
17	掌樂院題名記	成倪	148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虛白堂集』
18	題江原道監司先生案後	成倪	1484년	『虛白堂集』
19	監察廳壁畫記	成倪	1502년	『虛白堂集』
20	司諫院題名軸文	洪貴達	1500년 전후 추정	『虛白亭集』
21	司諫院題名記	申用漑	1506년 이후	『二樂亭集』
22	典鑑司題名記	南袞	1520년(중종15)	『신증동국여지승람』
23	議政府題名錄序	李荇	1523년(중종18)	『容齋集』
24	宜寧縣題名記 代縣監金意從作	李荇	1510년	『容齋集』
25	忠義衛廳題名案序	金安國	미상	『慕齋集』
26	紫門繕工監題名案序	金安國	1512년	『慕齋集』
27	書活人署契軸後	鄭士龍	1540년 내외	『湖陰雜稿』
28	禮曹堂上先生案序	洪暹	1554년	『忍齋集』

29	國子師儒先生案序	洪柱世	1623년 以後	『靜虛堂集』
30	原任大臣樞府題名錄序	李宗城	1623년 以後	『梧川集』
31	尙方題名記	金德承	1647년	『少痊集』
32	議政府東西壁題名案	許穆	1675년	『記言』
33	翰苑題名錄識	閔鎮遠	17세기초 추정	『翰薦錄』
34	忠勳府十九功臣題名版記	張維	17세기초 추정	『谿谷集』
35	宗親府有司堂上先生案序	申翊聖	17세기초 추정	『樂全堂集』
36	廣興倉題名記	李垞	17세기초 추정	『蒼石集』
37	宣傳官題名錄序	李植	17세기중엽 추정	『澤堂集』
38	玉堂題名記	申混	17세기중엽 추정	『初菴集』
39	典牲署提調先生案序	崔錫桓	17세기말 -18세기초 추정	『損高遺稿』
40	尙瑞院重修先生案式例跋	宋徵殷	17세기말-18세기초 추정	『約軒集』
41	草奏廳先生案重修跋	徐宗華	1735년	『藥軒遺集』
42	藝文館題名記	黃景源	1741년	『江漢集』
43	奎章閣題名記	黃景源	1776년(추정)	『江漢集』
44	衛從司題名錄序	俞肅基	1751년	『兼山集』
45	抄啓文臣題名錄序	李時秀	1786년(경조10)	『抄啓文臣題名錄』
46	內閣學士題名記序	徐命膺	18세기 말	『保晚齋集』
47	奎章閣題名記序	李福源	1773년 前後	『雙溪遺稿』
48	掖庭署題名記序	徐滢修	18세기말-19세기초 추정	『明阜全集』
49	宗正卿題名錄記	李是遠	19세기 중엽 추정	『沙磯集』
50	翰苑題名記	洪敬謨	1810년	『冠巖全書』
51	翰苑題名記	南公轍	1817년 前後	『金陵集』
52	司戶軒先生案序	朴允默	1821년경	『存齋集』

&lt;표2&gt; 지방 관청 제명기

번호	제목	작자	창작시기	출전
1	慶尙道營主題名記序	河演	1425년	『敬齋先生文集』
2	慶尙道左廂元帥府題名記	金宗直	1466년	『佔畢齋集』
3	咸州任官題名記序	康伯珍	1489년 겨울 이후	『咸州誌』
4	鹽州官師題名後語	尹斗壽	1579년-1581년	『梧陰遺稿』
5	書羅州牧先生案	趙憲	1581년	『重峰集』
6	書臨陂先生題名案	蘇世讓	16세기 중엽 추정	『陽谷集』

7	咸州任官題名記	鄭述	1586년	『寒岡集』
8	成川守臣題名案序	鄭述	1599년	『寒岡集』
9	永陽先生案序	黃汝一	1608년	『海月集』
10	大靜縣官案序	鄭蘊	1619년	『桐溪集』
11	慶尙道營主題名記序	金止男	1622년	『慶尙道先生案』
12	德源府先生案序	黃原	1643년	『漫浪集』
13	三水郡先生案序	尹善道	1661년	『孤山集』
14	晉州先生案記 代人作	柳命天	1680년 추정	『退堂集』
15	晉州營將先生案紱	任望	1685년	『水村集』
16	珍島郡先生案重修記	尹光啓	17세기초 추정	『橘屋拙稿』
17	咸陽郡先生案序	李海昌	17세기중엽 추정	『松坡集』
18	平海郡先生案序	申維翰	1728년	『靑泉集』
19	題淸州討捕營題名案	趙龜命	1729년	『東谿集』
20	江東縣先生案小跋 丙寅爲伯氏作	尹光紹	1746년	『素谷遺稿』
21	永川先生案跋	李衡祥	17세기말-18세기초 추정	『瓶窩集』
22	題鳳城先生案後	趙文命	18세기 중엽 추정	『鶴巖集』
23	題關西觀察題名案後	趙暉	18세기말 추정	『荷樓集』
24	分奉常司先生案序	申箕善	19세기후반	『陽園遺集』

먼저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관청 제명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2, 京 都下, <文職公署>)을 중심으로 현전하며 개인 문집에도 다수의 제명기가 수록되어 있다. 예상 외로 청요직(淸要職), 삼사와 같은 유력 관직이나 관 청에 대한 제명기가 모두 현전하는 것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내에서 각 관청은 품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요직으로 여겨지는 기관이 아닌 곳, 이를테면 제례와 시호를 담당하는 봉상시(奉常寺), 임금의 말과 수레를 담당하는 사복시(司僕寺) 등 궁궐 내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에 대한 제명기가 의외로 다수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무 담당 관청 내에서도 ‘내승’, ‘낭관’, ‘권지(權知)’ 등 실무 위주의 특정 직위나 비교적 하급 직위의 관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기의 창작 역시 눈에 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정치체제는 ‘의정부-6조’ 체제에 근간한 상설 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여 개의 아문(衙門)이 6조에 편입된 ‘속아문(屬衙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6조-속아문이 계서적(階序的)으로

연결된 집권적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서는 『주례(周禮)』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운영하고자 했던 조선건국세력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였다.<sup>13)</sup>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6조의 제명기보다도 속아문, 그리고 실무자들에 대한 제명기가 집중 창작된 것은 바로 속아문을 단속하려는 사대부 관료들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표에 제시된 전체 약 75편 가량의 제명기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21편이 성종대 이전인 조선 전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태종-성종 재임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제(職制)를 비롯한 각종 제도들의 축소, 폐지, 부활, 신설, 변경이 지속되면서 조선의 정치적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예문관 제명기인 <한원제명기(翰苑題名記)>를 예로 들면,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이전시기에 있었던 제명기가 조선 중·후기에 재창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셋째,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 왕조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관청의 개혁조치가 일단락 된 중종대 이후에는 제명기 창작의 방향이 다소 전환된다. 중종대 이후에는 규장각 외에 중앙 관청의 신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앙 관청의 제명기보다는 지방관청에 대한 제명기 창작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조선의 문헌이 대거 일실된 이후인 인조 연간 이후에 제명기 갱신과 창작이 두드러지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중앙조정의 제명기와 지방의 선생안은 창작 배경 등에서 상호간 차이를 보이고 그 명칭 또한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제명기의 창작 주체가 신료라는 점, 또 신료로서 군주의

13) 나영훈, 「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42면.

14) “先王寢館閣會圈之法，惡在其罷史薦也？大臣力爭而罷史薦，國人皆知其非先王之意也。今聖上益峻史選，其有光於聖人之孝也，亦大矣。舊薦檢閱，自臣祖故領議政翼成公喜，始見於案，歷三百五十年，止於臣身。及聖上即位元年，正史選，然後以新圈藝文檢閱，繼於舊薦，豈非天哉？”(黃景源, <藝文館題名記>, 『江漢集』卷10); “英宗十七年，更定館制，改薦立會圈法而召試之。”(南公轍, <翰苑題名記>, 『金陵集』卷12); “英宗辛酉以新進蹀躞之弊，罷史薦，立館閣會圈法。正宗元年丁酉，仍其圈而益峻選法，命以新選檢閱，繼於舊薦，於是乎史選絕而復續，史官清而又華，豈不休哉？”(洪敬謨, <翰苑題名記>, 『冠巖全書』冊14)

왕화<sup>15)</sup>를 보좌하기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주제의식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바 모두 조선 정치의 구성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제명기의 창작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조정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각 관청과 상급부터 하급까지의 모든 직위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다양한 시기에 걸쳐 전 조직을 망라하여 제명기가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이는 중추 기관과 실무 기관이 상호 연계 속에 각자 주어진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국정 전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장르적 원천

이처럼 조선시대에 제명기 창작이 성행한 데에는 사마광(司馬光)의 <간원제명기(諫院題名記)>로 대표되는바 송대(宋代) 및 원대(元代) 제명기의 영향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 비해 송원대에 들어 제명기 창작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것은 흥학(興學)의 기풍과 과거제의 성행에 기반을 둔 사대부 문화의 확산, 그리고 중앙조정과 각 지방의 관제(官制) 및 학제(學制) 개편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국에 걸쳐 관료사회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문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개인의 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정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성명과 출신지, 등과일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sup>17)</sup> 아래에 인용한 대목은 사마광의 <간원제명기>의 일부이다.

과거에는 간언을 담당한 관직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경대부로부터 공상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간언을 할 수가 있었다. 한나라가 설립된 이래로 비로소 간관을 설치하여 천하의 정치와 전국의 백성들의 득실과 이해를 하나의 관직에서 담당하여 말하게 되었으니 그 임무가 또한 막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관직을

15) 중앙조정의 제명기와 지방 선생안의 명칭 및 성격 차이에 대해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린다.

16) 이은주, 『조선 초기 ‘新都八景’ 詩의 제작과 성격』, 『한국한시연구』 제22집, 한국한시학회, 2014, 81~82면 참고.

17) 王曉驪 『宋代題名與題名記考論』, 『北京社會科學』 2016-2, 北京市社會科學院, 2016, 73頁.

담당한 자는 의당 대체에 뜻을 두고 세세한 것은 버려두며, 급선무를 우선시키고 늦춰도 되는 것을 미루어 오직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을 도모할 뿐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중략)

경력(慶曆) 연간에 전혼(錢昏) 군이 처음으로 전임 간관들의 성명을 판상에 적었는데, 나는 그것이 오래되면 없어질까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가우(嘉祐) 8년에 돌에 새겼으니, 후대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평론하기를 ‘아무개는 충성스러웠고 아무개는 아첨하였으며, 아무개는 정직하였고 아무개는 바르지 못했다 할 것이다. 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18)</sup>

이에 따르면 제명기는 내용상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당 관청이나 관직의 중요성과 역사적 변천을 서술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게 된 관리의 성품이나 능력에 대한 칭송을 서술하거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제시한다. 이어서 관리에 대한 권계나 당부로 마무리하고 있다.<sup>19)</sup> 원명(元明)대에 창작된 제명기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마광은 ‘정명(正名)’에 입각하여 정치적·도덕적 기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관료들이 정해진 직분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대체라고 여겼으며,<sup>20)</sup> 관원들의 행태가 국정의 치란과 직접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서를 통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이라고 표현된 바, 제명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락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마광의 제명기는 단순히 관료의 명단을 정리한 기록적 성격의 글이 아니라, 후임자들이 전임자의 근무태도, 정치적 행적의 잘잘못에 대해 간략

18) “古者, 諫無官, 自公卿大夫, 至于工商, 無不得諫者, 漢興以來, 始置官, 夫以天下之政, 四海之衆, 得失利病, 萃于一官, 使言之, 其爲任亦重矣. 居是官者, 當志其大, 捨其細, 先其急, 後其緩, 專利國家, 而不爲身謀. … 慶曆中, 錢君始書其名於版. 光恐久而薄滅, 嘉祐八年, 刻著于石. 後之人, 將歷指其名而議之曰: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嗚呼! 可不懼哉!”(司馬光, <諫院題名記>, 『古文眞寶』後集 卷6)

19) 梅華, 『宋代題名記的傳承與發展』, 『西北大學學報』43-6, 哲學社會科學版, 2013, 111~112頁.

20)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정명의 대의에 준거하여 존왕사상(尊王思想)을 고취하는 한편, 정명이 국가 정치의 흥망과 치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을 논하였다. 이범학, 『司馬光의 『正名』思想과 人治主義의 展開』, 『동양사학연구』 제37집, 동양사학회, 1991, 141~142면.

하게나마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곧 후인들의 포폄이나 역사적 평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자들은 ‘충직(忠直)’한 관료가 되어야 한다는 권계적 주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표현적 측면에서도 전범이 된 사마광의 제명기는 미적 수식이나 고사의 준용이 적은 편이다. 담백한 직설적 서술을 통해 주제의식이 대단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주제의식은 ‘군신’ 혹은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신료간’의 이상적 위계질서를 상정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이 조정의 위계 내지 계서에 따른 분수를 알고 각자의 직분에 걸맞은 행동을 함으로써 경외(京外)의 정치가 결집을 이룩할 수 있다는 단속과 권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명기는 매우 실용적 목적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파생된 후대의 제명기 역시 해당 관청의 업무와 관료들의 역할, 그리고 각 관청의 정치적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하는 한편 이상적인 관료상을 은연중에 묘사함으로써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물론 후임으로 올 인물들을 함께 신칙하기 위해 창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21)</sup>

제명기의 창작 주체들은 자신들의 행적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문인 서거정은 대사헌이나 대사간 등에 제배되는 동료들에게 반드시 제명록과 제명기를 읽어볼 것을 권유하면서, 제명록이 태평성대의 인재들이 서로 규간하는 목적에서 창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공론(公論)’을 어려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22)</sup> 정조(正祖) 역시 제명기가 고사와 사실을 기록하여 두고 이를 통해 신료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

21) 한편 채웅석은 고려 중기 이후 사론(士論)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관료상을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족망(族望)’으로 겨루는 이전시기의 문벌사회와 구분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였다. 채웅석, 『고려 중·후기 기로회(耆老會)와 개경(開京) 사대부(士大夫) 사회』, 『역사와 현실』 제79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80면.

22) “聖代堂堂言路開, 喜君超擢長烏臺. 升平無事封章少, 朝罷香煙滿袖廻. (….) 壁上高懸御史箴, 神羊一角畫森森. 煩君讀我題名記, 同列相規古到今.”(徐居正, <賀柳大司憲輓>, 『四佳集』詩集 卷31); “煩君讀我題名記, 同列相規佐聖王.”(徐居正, <奉賀李韓山封拜大司憲>, 『四佳集』詩集 卷40); “請君讀我題名記, 前後英雄復幾人.”(徐居正, <工郎燕會圖>, 『四佳集』詩集 卷46); “某直某忠某詐回, 諫官箴警久傳來. 勸君讀我題名記, 公論由來可懼哉.”(徐居正, <賀權大司諫誕>, 『四佳集』詩集 卷50)

다.<sup>23)</sup> 즉, 인물평은 ‘제대로 된 사람’이 올바른 직위에 등용되었는지 등 당대 정치의 득실이나 포폄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점, 나아가 그것이 조직구성원간의 위계와 층위를 넘어 관료사회 내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규범으로 작용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제명기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작주체와 제명기의 증정대상 모두 ‘사대부’ 자체가 아닌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에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제명기는 임금의 덕화에 대한 칭송이나 찬양의 기조가 강한 일반적 관각문학과 달리 관료 사회 자체의 문체에 주제의식을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관각문학의 외연을 좀 더 넓혀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장르가 아닌가 한다.

조선 전기에 산생된 제명기의 경우 송대와 더욱 유사한 시대적 맥락 하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표현방법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서거정이 지은 <사헌부제명기>를 들 수 있다.

아! 어사의 직임은 역대에 걸쳐 모두 막중하니, 그 책임이 무겁고 컸으며 그 근심 또한 깊었다. 어찌서인가? 어사로 적임자를 선발하면, 군주에게 잘못된 거조가 있을 때에 역린을 하고 우레와 같은 분노에 맞서고 큰 형벌을 받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물러서지 않고 바른말을 올릴 것이다. 또한 고관대작들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종척과 근신들이 교만하면 이들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인(小人)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그를 제거하고자 할 것이고 탐오한 자가 벼슬에 있으면 반드시 그를 물리치고자 할 것이다. 곧은 이를 들어 쓰고 굽은 이를 내치며, 더러운 이를 공격하고 맑은 이를 선양할 것이다. 엄정한 안색을 하고 조정에 버티고 있으면 모든 벼슬아치들이 두려워하며 조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어찌 무겁고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약 어사에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한다면, 군주에게 잘못된 거조가 있거나 고관대작이 합당한 인물이 아니거나 조정의 정사에 잘못이 있거나 나라 일에 실책이 있더라도 못 듣고 못 본 체 할 것이다. 마치 물건으로 귀를 틀어막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재갈을 입에 물린 것처럼 하여, 입을 닫고 구차하게 임금의 비위만 맞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몸이야 온전히 보전하고 재앙을 멀리할 수 있겠지만, 직분에 대해서는 어찌하며 여론에 대해서는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23) “題名記, 所以備故實而考能否也.”(<內閣學士題名記序>, 『序引 1』, 『弘齋全書』 卷8)

어사된 자의 근심이 역시 깊지 않겠는가?<sup>24)</sup>

서거정은 사헌부 어사의 책무의식과 역할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3자와 4자구로 이루어진 배비구를 활용하여 임금에서부터 대신, 종척, 소인배나 탐악한 관리 등을 규찰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헌부제명기> 가운데 가장 정채로운 대구와 연쇄법의 표현수법이 돋보이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송대의 문인 석개(石介)가 지은 <공중승께 올리는 편지(上孔中丞書)>에서 ‘중승’, 즉 어사가 조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묘사한 고사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해당 부분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且天子之設御史府，尊其位，重其任，不與他府，並舊有大夫則中丞，亞大夫而領其屬，今大夫闕則中丞其長也。故中丞之任，特重焉，中丞之責，尤重焉。君有佚豫，失德悖亂，亡道荒政，咈諫廢忠慢賢，御史府得以諫責之。相有依違順占，蔽上罔下，貪寵忘諫，專福作威，御史府得以糾繩之。將有驕悍不順，恃武肆害，玩兵棄戰，暴刑毒民，御史府得以舉劾之。… 如有鉗緘其口，朝廷有關政，國家有遺事。<sup>25)</sup>

조선 건국 직후 관제와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송원대의 고사가 널리 활용되었고,<sup>26)</sup> 제명기의 작가들이 곧 그러한 정비와 입안을 담당했던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송원대에 대량 창작된 제명기의 표현수법과 논지 전개 방식, 관제나 관직과 관련된 고사를 익숙하게 활용한다는 점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은 당송대의 제도에서 비롯된 고려시대의 각종 관제를 대부분

24) “嗚呼！御史之職，歷代重之。其任重，其責大，其憂亦深。何者？御史得人，則君有過舉，批龍鱗，抗雷霆，蹈斧鉞而不辭；將相大臣有愆違，得以繩糾之；宗戚貴近有驕悍，得以彈擊之；小人在朝，必欲去之；貪墨在官，必欲屏之。舉直錯枉，激濁揚清，正色立朝，百寮震攝，其責任豈不重且大乎？如或御史失人，君有過舉，將相非人，朝廷有關政，國家有遺事，若不聞不見，如有物塞其耳，有手掩其目，有鉗緘其口，默默苟容，則雖全身遠害，於職分何？於物議何？其憂也，不亦深乎哉？”(徐居正, <司憲府題名記>, 『四佳集』文集 卷1)

25) 呂祖謙, 『石介』, <上孔中丞書> 『宋文鑒』卷114. 한편, 정도전의 『경제문감』 역시 이 부분을 차용하였다. 『臺官』, 『經濟文鑑』下, 『三峰集』卷6 참고.

26) 도현철, 『<經濟文鑑>의 引用典據로 본 鄭道傳의 政治思想』, 『역사학보』 제165집, 역사학회, 2000 참고.

계승함과 동시에 명대의 제도를 새롭게 차용하며 이를 차츰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해나갔다. 동시에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법제를 정밀하게 다듬어갔으며 그 노력은 성종대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sup>27)</sup> 윤진영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조선 전기에 각 관청에서 본격적으로 관원들의 인사기록을 한 책자 안에 성문화하고 이를 점차 축적해나간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정치의 주체인 사대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후인들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며 조선의 새로운 정치적 질서 수립해나가고자 하는 예제적·유학적 정치 개편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관청의 연혁을 서술하고 관서 명칭의 변천이나 관직 품계의 이동이 서술되는 한편 구체적 업무를 설명하는 단락이 반드시 삽입됨으로써, 『경국대전』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의 추상적 직제<sup>28)</sup>나 업무 특징, 업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III. 관청 제명기의 통시적 변화 양상

#### 1. 조선 전기: 새로운 인재상 확보와 계서적 질서 강화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의 유제(遺制)를 극복하고 점차 조선적 정치질서가 수립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건국 이후 성종대까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세대가 축적되면서 조선적 정치질서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다. 조선 전기의 제명록은 바로 교체된 인재상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집현전 학사 출신이자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유성원(柳誠源)이 지은 <의금부제명기(義禁府題名記)>에 그러한 목적의식이 잘 드러난다.

관청에 제명이 있는 것은, 대개 사마천의 『사기』 연표에 기원을 둔 것이다. 성씨와 취임일, 이임일 등을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열람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

27) 이와 같은 조선 초기의 관제와 법제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참조.

28)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한양의 탄생』, 글항아리, 2015, 37면.

대를 논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옥사를 관장하는 관청은 형조와 의금부가 있는데, 형조는 주로 도적을 다스리거나 포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금부는 옛날의 조옥(詔獄)이니, 조정의 큰 옥사와 조정 안팎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어 처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모두 이곳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그 소임이 더욱 막중하다. (중략) 이것이 의금부 건치 연혁의 대략이다. 그런데 국초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제명기가 없었으니, 의금부 내에서 이를 늘 안타깝게 여겨왔다. 하루는 제조(提調) 권준(權準) 공께서 진무(鎭撫) 안위(安位) 군에게 위촉하여 오래된 문서를 두루 찾아 고(故) 의정 평도공(平度公) 박은(朴崧) 공 이하 몇 분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금(巡禁) 이상의 호칭에 대한 문적은 유실되어 거의 상고할 길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발견된 부분에도 간간이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선 상고할 수 있는 부분만을 취하여 책에 연서하여 뒤에 올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명기라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당송 이래 비록 궁벽하고 작은 고을일지라도 제명기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하물며 법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직에 대한 제명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오늘날 여러 공들께서 간절하게 잊지 못해온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 제명기를 열람하는 자들이 기록된 사람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게 된다면 다만 그들의 성명과 취입한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닐 것이다.<sup>29)</sup>

유성원은 제명기가 『사기』 연표에서 역대 임금이나 신료들의 삶, 주요사건 등을 연대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서두를 연 뒤, 『맹자』의 ‘지인논세(知人論世)’<sup>30)</sup> 즉, 역사적 인물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이론을 근거로 제명기의 필요성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해당 관직에 책임자가 등용되었는지, 그 인물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등 제명기에 기록된 인물과 그에 대한 역사적 평판을 통

29) “官府題名，蓋本於遷史之年表，所以著姓氏遷除日月，使後之覽者，尙論其世而有以知其人也。國朝掌獄之官曰刑曹也，曰義禁府也，刑曹主治寇賊刑暴亂，禁府則古之詔獄也。朝廷大獄及中外久滯難斷之事，皆於是焉歸，任尤重矣。…此建置沿革之大略也。自國初迄今，題名尙未有記，府中恨之，一日提調權公蹲，屬鎭撫安君位，蒐羅故牘，得故議政朴平度公以下若干人，其稱巡禁以上文籍逸失，漫不可考，而所得者，亦間有關焉。姑取其可考者，聯書于冊，庶來者有考焉。夫題名尙矣，唐宋以來，雖偏州下邑，莫不有記，矧伊臬事之重官而闕之可乎哉？此今日諸公倦倦之意也，覽者因其人而尙論之則，不但取姓氏歲月之可見而已。”(柳誠源, <義禁府題名記>, [京都 下], 『文職公署』,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30) “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孟子』, 『萬章』, 下)

해 당대 정치의 치란과 득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의금부의 제명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 의의를 서술하는 대목은 주목을 요한다. ‘순금(巡禁)’의 호칭을 사용했던 시기 이상으로 소급해가는 기록은 상고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생략된 대목에서 “국조(國朝)에서도 (고려의 칭호를)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2년에 순위부(巡衛府)로 고치고, 태종 3년에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고쳤다.”<sup>31)</sup>고 한 기록을 볼 때, 조선 건국 초기 이상으로 소급되는 기록을 당시에 이미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제명록은 ‘역성혁명’과 왕자의 난 등 혼란스러운 개국의 과정에서 일실되었거나 애초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은(朴崑, 1370-1422) 이후의 인물부터 상고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제명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지인논세’는 물론 유성원만의 독자적 생각은 아니다. 그 연원이 『맹자』에 있거니와, 인용한 글의 상당 부분, 이를테면 ‘蒐羅故牘~姑取其可考者, 聯書于冊, 庶來者有考焉’의 문단은 원대(元代)의 ‘유림사결(儒林四傑)’ 가운데 한 명인 황진(黃潛, 1277-1350)의 제명기에서 그대로 인용한 표현이기도 하다.<sup>32)</sup> 황진은 <강제행중서성제명기(江漣行中書省題名記)>, <한림국사원제명기(翰林國史院題名記)>, <중서성우사제명기(中書省右司題名記)> 등 그의 문집에 총 8편 가량의 제명기를 남겼는데, 이들 작품에서 공히 ‘지인논세’의 이론과 제명기가 후임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행적을 남겨준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익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힌바 있다. 또한 작은 고을일지라도 제명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무리 단락 역시 황진의 <한림국사원제명기>의 논지전개와 상당부분 동일하다.<sup>33)</sup>

유성원의 제명기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조선 건국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인재들만이 의금부 제명록에 기록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31) “國朝因之, 太宗二年改爲巡衛府, 三年又開爲義勇巡禁司.”(柳誠源, 위의 글); 『太宗實錄』 卷5 1403年(태종 3) 6月 29日 기사 참조.

32) “是用蒐羅故牘, 考其姓名、資秩、遷次而刻諸石, 庶來者有考焉.”(黃潛, <翰林國史院題名記>, 『金華黃先生文集』 卷8 續彙5)

33) “夫題名雖非古, 而唐宋以來, 偏州下邑, 莫不有記, 矧以文學侍從之臣, 於焉萃止, 安可觀其闕文而弗之講乎? 覽者因其人, 而尙論其世, 則國家之聲明文物, 名公大人之遺風餘烈, 猶可槩見也.”(黃潛, 위의 글)

새로운 법적 질서를 후대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완곡하게 표현된 일종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려는 문벌이 지나치게 중시되었고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문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던 정치시스템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유성원이 강조하는 ‘시인’은 ‘시서(詩書)’로 상징되는바 인물의 학식과 내면의 성품, 능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논세’ 즉 인재를 통해 그 시대 정치의 득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유학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의 제명기에는 고려와 달리 사실상 특정 직위에 있는 인물에 대해 그 가문이 아닌 오직 학업과 덕망, 그리고 실제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포폄의 기준을 제공하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재와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각각의 정치인들이 해당 관청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양식을 보여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이 글과 비슷한 시점인 1454년에 창작된 이극감(李克構)의 의정부 사인(舍人)에 대한 제명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인재들이 왕화를 보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만기(萬機)의 번거로운 일을 임금 한 사람이 다스릴 수는 없다. 그리하여 재상(宰相)을 둔 것이다. 재상 역시 정사를 홀로 돌볼 수는 없으므로 보좌하는 속관을 둔 것이다. (임금이) 일국의 임무를 재상에게 위임하였는데, 재상이 매일 국정을 함께 도모하고 논의하는 자는 바로 속관들 밖에 없다. 주나라 때에는 재사(宰士), 한나라 때에는 승상장사(丞相長史)가 바로 그 속관이다. 고려에서는 도평의사(都評議司)가 국사를 총괄하고, 속관으로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었는데,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자로 겸직하게 하였다. 우리 조선에서는 의정부를 설치하여 주나라의 삼사(三師)와 삼소(三少) 관직을 모방하여 재상의 작위와 명호를 바르게 하고, 사인 2명을 두어 재상을 돕게 하되 상신으로 하여금 직접 채용하게 한 것은 그 인선을 신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중략) 사인 직위에 선임되는 자가 윗사람에게 옳은 일은 말해 주고 그른 것은 고치게 하기를 생각지 않고, 한갓 명령에 공손히 답하며 따르는 것을 임무로 여긴다면 이는 곧 일개 이서(吏胥)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국가에서 이 관직을 설치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뒤에 오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sup>34)</sup>

이 글은 의정부 관제 가운데 정4품 낭관인 사인에 대한 제명기이다. 이극감은 먼저 임금과 재상의 업무를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할 사인의 중요성을 조령체(詔令體)의 엄정한 대구를 통해 강조하였다. 특히 주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속관인 ‘사인’ 벼슬의 변천과 중요성을 집약적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임금이 만기친람을 할 수 없으므로 신료들의 보좌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사인은 재상을 보필하기 위해 직접 인신할 만큼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글의 주제의식을 포괄하고 있는 단락은 바로 말미인데, 여기에서 이극감은 사인들이 ‘獻可替否’ 즉 옳은 일을 권하고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상을 보필하고 왕화를 도우야 한다고 면려하였다.

2장에서 표를 통해 살펴보았듯, 제명기를 창작한 주체는 주로 서거정이나 이극감, 이숙함과 같은 조정의 중진 대신들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인(舍人)이나 검상(檢詳)과 같이 정4품 내지 정5품 연소한 낭관이거나 내승(內乘)과 같이 궐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원들이다.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글의 수신자인 하위 관원들에 대한 신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 제명기를 쓴 이극감 본인도 세조1년부터 2년 9월까지 사인을 역임한 바 있는데, 직진 벼슬은 응교였고 이후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므로<sup>35)</sup> 사인의 업무와 전후의 선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사인의 기능은 『경국대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왕과 의정부대신의 중간에서 승전(承傳)을 하고 춘추관직을 겸하여 역사 편찬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능력과 우대를 바탕으로 조기에 당상관에 승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sup>36)</sup> 이극감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인 업무의 정치적 중요성을 경험적·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인에 임명되는 자들이 스스

34) “萬幾之煩，一人所不能獨理，於是乎有宰相焉。相亦不能獨理，於是乎有僚佐焉。夫以一國委之相，而相之所日與圖議國政者，僚佐耳。周有宰士，漢有丞相長史，是其職也。高麗都評議司，總治國事，置經歷都事，皆以他官兼之。我朝建議政府，倣成周三師三少之職，以正宰相之位號，又置舍人二員以佐之，令相臣自薦辟，所以重其選也。… 居是選者，不以獻可替否爲心，徒以唯諾承稟爲任，則不過一吏員耳，豈國家設置之意乎？深有望於後之諸君子云。”(李克權, <議政府舍人司題名記>, [京都 下], 『文職公署』,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35) 한충희, 『朝鮮初期 議政府舍人·檢詳의 官人的 地位』, 『역사교육논집』 제13·14합집, 역사교육학회, 1990, 529면.

36) 한충희, 위의 논문, 543~548면.

로 인재라는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랐다.

고려의 문하부(門下府)가 조선의 의정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인의 임무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임무란 군주와 대신의 말을 전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적임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7)</sup> 그래서 사인은 대부분 문과급제자이거나 당상관의 자손 즉 문음이라 할지라도 학문과 글쓰기 능력이 출중한 인재들이 엄격하게 선발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sup>38)</sup>

그런데 조선 중기의 문인인 심수경(沈守慶)이 편찬한 『견한잡록(遣閑雜錄)』에는 사인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사인사(舍人司)의 연정(蓮亭)에 학을 한 쌍 길렀다거나, 직무가 한가하여 매번 선생(先生 : 전임자)들을 초청하여 풍악을 울렸다고도 하였다.<sup>39)</sup> 이 사례는 비록 16세기에 변화된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극감이 언급한 ‘唯諾承稟’만 일삼는 한가한 사인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극감은 사인들이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군주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는 인재들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여 국정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계서적 정치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서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거정은 <공조낭청제명기>에서 낭관직에 선발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한편, 훌륭한 전임관에 비추어 낭관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킬 것을 추동하고 있다.

(낭관직은) 그 선발이 매우 엄중하여 반드시 국량과 재예가 모두 뛰어난 자를 선택하여 직책을 제수하였다. 국초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이 직책을 역임했던 분들 가운데 어진 이가 몇이었으며 유능한 이가 몇이었으며 당대의 명재상이 된 이가 몇이었는지 모를 정도이다. 앞뒤로 부임하는 자들도 인순하기를 좋아하여

37) “左政丞河崙啓曰：‘今內書舍人，古之門下舍人也。今既改門下府爲議政府，別置司諫院，而舍人尙襲諫官之號，名實不同。請罷議政府經歷都事，改內書舍人爲議政府舍人。’上曰：‘然。但世俗厭革古常，豈知其當然乎？’崙曰：‘行之日久，時議自息。’上曰：‘然。舍人者，傳人君及大臣之言，副於代言，不可不擇也。’乃以檢詳官李蕃、都事徐選爲之。”(『太宗實錄』卷6, 1403年(太宗 3) 7月 16日)

38) 한충희,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329~353면 참고.

39) “舍人司蓮亭畜鶴一雙，戊子己丑年間，產鶴卵育也。…舍人司蓮亭，有池臺之勝。舍人無職務，每邀先生爲聲妓之樂，宰相亦多赴焉，人比之登瀛。”(沈守慶, 『遣閑雜錄』)

그 성명을 기록하지 않아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니 어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니라! (중략) 오늘날은 조정 내외의 각 아문에도 왕왕 제명기가 있다. 하물며 공조는 매우 일이 복잡한 관청이고 공조의 낭관은 일대의 우수한 인재로서 선발되어 육경(六卿)을 보좌하고 백공(百工)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니, 그 임무가 막중하지 않은가! 그러니 제명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여러 공들께서 제명기를 만드는 일에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제명기를 바탕으로 인물의 성쇠와 공적의 근태, 근무한 기간을 살펴 그 가운데 본받을 바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바도 있을 것이니, 도움이 되는 바가 어찌 작겠는가?<sup>40)</sup>

이 글에서 서거정은 대구나 전고의 활용과 같은 문학적 기교 대신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문체로 낭관직에 선발되는 인재의 우수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幹局藝能俱優者’는 ‘賢幾人-能幾人-爲時名相者幾人’과 같이 낭관들이 어느 지위에까지 오르는가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낭관의 직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는 앞서 유성원의 제명기와 마찬가지로 ‘지인논세’의 논리와 관련 있는데, 조정의 인선(人選)이 엄밀하고 정확하다는 의미이자, 조선 전기의 정치가 이미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낭관들이 당상관에 승진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임관들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통제 내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공조 낭청’이라는 관직에 소속된 자긍심과 개인적 성공을 향한 추동력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공조의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왕화를 보좌하여 조선을 안정적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알 것과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역사적 평가가 엄중하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시하였다.

40) “此歷代之郎中員外也，厥選甚重，選必用幹局藝能俱優者授之。自國初，至今六十餘年之間，歷是任者，不知賢幾人，能幾人，爲時名相者幾人，前後來者喜因循，不錄姓名，使沒沒無傳，豈不深可惜哉？… 今中外庶司，往往有之，況工爲劇曹，郎吏爲一代之高選，佐六卿，若百工，其任不既重乎？可無題名也哉？宜諸公之拳拳也，抑因此以考人物之盛衰，功績之勤怠，遷次之日月，有所取舍於其間，則其所補豈小哉？”(徐居正, <工曹郎廳題名記>, 『四佳集』文集 卷2)

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임금께서 타시는 수레와 말, 그리고 목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복시(司僕寺)'이고, 녹관 가운데 궐내에서 말과 수레를 맡은 자를 내승이라고 하여 으레 다른 관직에 있는 자를 택하여 겸직하게 한다. 이때 반드시 몸가짐이 단정하고 근엄하며 재덕이 모두 우수한 자를 가려서 보임하여 당대의 뛰어난 인재를 지극히 대우하였다. 여기에서 다른 데로 진출할 때에는 모두 고관에 제수되거나 중요한 외직(外職)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세상에서는 이 때문에 모두 내승을 역임하는 것을 부러워하였다. (중략) 선유(先儒)들이 논하기를, '임금을 조석으로 같이 모시고 거처하는 자가 임금의 기상(先)과 체모(體貌)를 변화시킨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일로써 상고해 보면 내승이란 곧 복신(僕臣)이다. (중략) 이들이 어주(御廚)의 음식을 먹고 윤변으로 숙직하면서 임금의 곁에서 생활하고, 임금의 깃발 사이에 조용히 모시고 있으므로 그 직무와 거리가 대단히 가깝다. 그러므로 설령 임금과 함께 생활한다고 말하더라도 가할 것이며, 임금의 기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가할 것이니, 그 직책의 중대함이 어떠하겠는가?<sup>41)</sup>

앞서 살펴본 두 사례가 의정부와 육조라는 주요 기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숙함은 지은 <사복시내승제명기>는 구체적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듯하다.

'내승'은 고려시대에는 다소 문제적 벼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금의 지근에서 수레와 말과 같은 이동수단을 담당하다보니, 임금이 사냥을 할 때나 거동을 할 때 늘 함께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백성들에게 각종 경제적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다.<sup>42)</sup>

이숙함은 먼저 『고려사』나 『경국대전』에서 '사복시'를 정의하는 표현을

41) “國制，掌輿馬廐牧者曰司僕寺，有祿官其在禁中，掌路馬輦轂者曰內乘，例帶以他官。必擇儀表端嚴，才望俱優者補之，以極一時之選，其遷去也，皆授高官，或鎮雄藩，世以此款之。…先儒論之曰：‘人主朝夕與居移養氣體。’以今攷之，內乘卽其所謂僕臣也。…食天廚，輪直宿，步武螭頭之側，從容豹尾之間，職親而地密，則雖謂之與居可也，謂之移養可也，其職任之重，爲何如哉？”(李淑斌, <內乘題名記>), [京都 下], 『文職公署』,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42) “鷹坊內乘，毒民尤甚者，前已下令革罷，後復遷延，中外失望，至使龍善，馳出見責，可不愧于心乎，德寧寶輿等庫，凡非古制者，一切釐革，庶永不負聖旨勤恤之意，刺史守令，得其人則民受其福，不得其人則民遭其害，官高而降爲者，偃肆不遵法，年邁而求得者，昏懦不任事，或以請謁，起龔啟垂金魚者，又不足言也。”(『高麗史節要』 卷25, 忠惠王 條, 甲申 5年(1344)); “司僕，掌乘輿，親近左右，其選最重，近代別立內乘，內豎之徒，專擅其職，日者縱暴尤甚，其收菟槁也，劫奪萬端，輪轉入城也，農牛瘡，殘破畿縣，每流諸郡，一州之內穀草之價，布幾至九百匹。”(『高麗史節要』 卷33, 辛禡 四, 戊辰辛禡 14年(1388))

그대로 차용하여 작품의 서두를 열었다.<sup>43)</sup>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재주와 덕망을 모두 갖춘 자를 선발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서거정의 <공조낭청기>와 마찬가지로, ‘사복시’를 역임한 사람들은 모두 고관을 역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낮은 품계의 관청이라 할지라도 승진이라는 관료들의 현실적 욕망을 실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낭관들과는 달리 업무상 임금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숙함은 『서경』의 ‘복신(僕臣)<sup>44)</sup>의 개념과 그에 대한 송대 문인 여조겸(呂祖謙)의 주석을 활용하여 이들이 임금의 기질과 성품을 올바른 쪽으로 유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실무진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치의 계서적 질서를 모두 수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복시, 광흥창(廣興倉), 상의원(尙衣院) 등 6조의 속아문들의 경우 조선 전기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차차 제명록을 갖추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명기에서는 모두 ‘관직에는 준비(尊卑)가 없으니 주어진 직분에 따라 진심을 다하며 국정에 보탬이 되면 된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반복<sup>45)</sup>하며 조정의 계서적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할 것과, 관청의 각 구성원들이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정을 보좌하는 대사(大事)와 직결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선 전기의 제명록은 모두 내부적 요구에 의해 제작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명록의 창작은 곧 해당 관청과 관직의 공적 권위를 제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축적된 인적 요소를 내부의 구성원들이 반성적으로 계승해 간다는 구체적 물적 증거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명기는 일정 부분 내부의 단결과 자체정화를 도모하고 관청의 구성원

43) “司僕寺, 掌輿馬廐牧.”(『高麗史』卷76, 志 第30, 百官1)

44) “僕臣正, 厥后克正; 僕臣諛, 厥后自聖.”(『書經』, 『罔命』)

45) “惟其所爲, 官雖卑而務劇, 職雖小而事辦, 任雖分而權專, 劇察其勤, 辦察其能, 專察其廉, 於是乎賢愚才否立別焉.”(金安國, <紫門繕工監題名案序>, 『慕齋集』卷11); “官無尊卑, 隨其分皆可以盡心. 事無巨細, 竭其誠皆可以利國.”(李垓, <廣興倉題名記>, 『蒼石續集』卷5); “活人署, 有東西兩司, 衙門雖卑末, 職掌則實王政之大事.”(鄭士龍, <書活人署契軸後>, 『湖陰雜稿』卷8)

들에게 위계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관직을 역임한 이후 고관으로 승진하는 사례와 해당 직임의 중요성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신료들의 자부심과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이륙(李陸)이 <사복장선생안서(司僕將先生案序)>에서 관청나속사의 지위 준비와 관계없이 제명록의 작성을 통해 전배들의 훌륭한 능력을 고찰할 수 있음은 물론 조정이 인재를 얻은 융성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sup>47)</sup>

대신들은 이처럼 제명록의 제작이 관청 업무의 구체화, 관청 내 인적 구성원의 단결 도모, 미래의 인재에게 당위적 가치를 제시하는 등의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특히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질서와 지배체제가 차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그러한 계서적 질서가 영속되기를 바라는 사대부 관료층의 현실적 욕구가 그 주제의식에 담겨 조선 전기를 통틀어 창작되는 제명기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8)</sup>

## 2. 조선 중기 이후: 기록의 재구축과 지방으로의 전환

중종대가 지나며 조선은 정치적 안정에 접어들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그것이 모두 무너지는 격변을 만나게 되었다. 사대부 관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재 등으로 인해 멸실된 기록들을 정비하여 재구축하는 한편, 그 정비와 정련의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질서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치세에 대한 회구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변화된 주제의

46) 남곤(南袞)의 <전함사[제명]기(典鑑司[題名]記)>(『新增東國輿地勝覽』 卷2)에 그러한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군자(士君子)가 태평한 시대를 만나 벼슬길에 들어선 뒤 장차 조정에서 사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낮은) 관직이 처음 출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창고를 출납하는 위리(委吏)나 가축을 사육하는 승전(乘田) 같은 미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맡은 직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이 자리는 저 위리나 승전에 비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임에라?(士君子漕明時立亨途, 將欲奮庸於朝廷, 而於此爲發軔之初程, 雖委吏乘田之微, 且賤焉者, 亦宜不曠其職, 況非彼之可擬者乎?)”

47) “披案指名, 以想本衛諸賢之風, 又知朝廷得人之盛乎.”(李陸, <司僕將先生案序>, 『靑坡集』 卷2) 참고로 사복장은 사복시의 수장으로 종2품 벼슬이다.

48)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통시적 의미-‘태조-성종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제27집, 국제어문학회, 2003, 38면;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鮮初樂章의 이중성』,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5-36면 참고.

식이 조선 중기 이후의 제명기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중앙 관청보다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백성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 관련 제명기의 창작이 양적으로 급증하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 관찰사 및 수령 등 지방관의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이들에게 중앙조정과의 관련 속에 지방에 조정의 교화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적 사명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전에 들으니 경주부의 옥적(玉笛)과 석함(石函), 가야금(伽倻琴) 등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임진왜란의 병화(兵火)에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오직 선생안만은 보관되어 있었으니, 호장 한 명이 선생안을 잃어지고 산속으로 도망가 병화를 면하고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찾아보았더니, 신라가 멸망한 이후 8·900여 년간 자사나 윤, 통판 등의 기록이 역력히 실려 있었고, 경우에 따라 실적(實績)이 부기된 부분도 있었다. 이것은 은연중에 야사(野史)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니 일대의 다행이라고 하겠다.<sup>49)</sup>

인용한 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608년, 당시 영양군수(英陽郡守)를 역임하고 있던 황여일(黃汝一, 1556~1622)이 쓴 제명기이다. 이 글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지역에 보관되어 있던 제명록이 사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제명록이 정사(正史)를 보완하여 신라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야사(野史)’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병화를 피해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단한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통치의 근거가 되는 행정 문건 및 선생안의 축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경상도 지역이나 해안 지역은 화재나 약탈로 인해 더더욱 문적의 보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글과 같이 토박이 이서들의 노력이나 증언, 기억, 향촌 사족들의 집안에 흩어져 남은 자료에 의지하여서라도 통치 관련 자료를 수합하고 후대로 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49) “余向聞鷄林府玉笛石函伽倻琴羅朝舊物，皆沒於壬辰倭火，惟府藏先生案，有一戶長負逃山中，仍免燹獨存云。余適過而求見之，羅亡以後上下八九百年之間刺尹通判，歷歷俱載，或附以實績，隱然有野史遺意，一大幸也。”(黃汝一, <永陽先生案序>, 『海月集』卷7)

대정현이 현이 된 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 선생안이 지금에서야 만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것은 오늘날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전해 오던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사또가 이를 개수(改修)하기만 하였을 뿐이니, 계술(繼述)한 것이지 어찌 저작했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전의 이른바 선생안이라는 것은 공안(公案)이 아니라 하리(下吏)의 사사로운 기록이었다. 성명을 적은 것으로 말하자면, 단지 음이 같은 글자만 썼을 뿐 진위(眞僞)를 구분하지 않았고, 연월(年月)을 기록한 것으로 말하자면, 선후가 어긋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지경이다. 또한 거친 종이에 어지럽게 적은 것은 언급할 것도 못 되니, 일찍이 무슨 선생안이 있었다고 하겠는가? 사또가 정치를 행한 지 지금 3년인데, 정치가 맑고 은택이 시행되어 온갖 폐해된 것이 모두 되살아났다. 이에 이 기록을 취하여 바꾸고 새롭게 하되, 글자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연월이 어긋난 것은 바로잡고, 빠진 것은 보충하고, 간략한 것은 상세하게 한 다음, 깨끗이 장정하여 외양을 꾸미고, 정밀하게 써서 내용을 알차게 했으니, 펼쳐서 살펴보면 분명 하나의 안사(案史)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뒤라야 비로소 선생안이라 할 만하니, 사람들은 비록 저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저작이라 할 것이다.” 하였다.<sup>50)</sup>

인용한 글은 정은이 1619년 제주도 대정현의 선생안에 대해 붙인 서문이다. 정은은 대정현은 연혁이 오래된 지역이고 현재(縣宰)의 선정(善政)이 그 임기인 3년째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며, 이러한 지방일수록 선생안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대정현 선생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전임 지방관의 명단을 적어 둔 기록이 있었지만 성명이나 연월 등 객관적 사실이 전혀 고증되어 있지 않고 오탈자도 많아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의 기록을 취하여 갱신하되, 오탈자를 바로잡음은 물론 치적과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보충하고, 나아가 형태적 측면에서도 장황(裝潢)과 서사(書寫)에 신경 써 그 가치를 더욱 드높였다는 창작 경위를 소상

50) “縣之爲縣，迨今數百年矣，先生案之作，始見於今日，何歟？曰：‘非作於今日也，蓋自古傳來者久焉，而今侯特因而修改之耳，述之云耳，豈曰作之云乎？’曰：‘然。前所謂案者，非公案，乃下吏私記也。書姓名則只取音同而不辨眞僞，記年月則前後乖舛而無所取徵，麤紙胡書，固不足道也，曾何案之有哉？侯之爲政，于今三年，政清恩行，百廢俱興，乃取此錄，易而新之，字之訛者改之，時之舛者正之，遺焉而補之，略焉而詳之，鮮粧而貴其外，精寫而侈其內，展而觀之，宛然一案史也。如斯然後方可謂之先生案。’”(鄭蘊，〈大靜縣官案序〉，《桐溪續集》卷2)

하게 기록해두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였듯, 제명록은 그 형태상의 위압감으로 해당 관청나 지역의 위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은은 이처럼 대정현감이 선생안의 개수(改修)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지어 ‘著述’의 경지라고 추어올림으로써 그 철저한 사명감을 고평하고 있다.<sup>51)</sup>

그런데 지방관직에 대한 제명록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단순히 기록의 축적과 재구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지방관의 위상이 고려시대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잠시 외직(外職)에 나왔다 중앙조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이행(李荇)의 제명기에 잘 드러난다.

의령현은 옛 신라의 장합(獐合)인데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고, 그 후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사이 변혁을 겪고 부속(附屬)이 바뀐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징험할 기록이 없다. 아, 고을의 건치와 연혁은 큰일임에도 오히려 징험할 수 없다니. 게다가 이 고을에 수령이 된 이는 혹 6년, 3년 또는 1, 2년 또는 1년도 못 채우고 임기를 마쳐서 마치 나그네가 여관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잠깐 사이에 훌쩍 떠나 버린다. 그리하여 옛사람은 멀어지고 새 사람은 또 옛사람이 되고 마니, 그 성명이 그대로 묻혀서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상할 것도 없다.<sup>52)</sup>

51) 조선 중엽에 김종직의 조카 강백진이 지은 <함주임관제명기서(咸州任官題名記序)>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선생안이 보존되어 온 과정과 개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己酉首冬, 余爲母乞此郡, 翌月中澣, 視龜郡乃四岐之間簿領雲集使星絡踈余才不能堪思前之守此郡某賢某劣將欲爲法爲戒旁搜先生案不得焉. 吏趙軒告曰: ‘自古郡無先生案. 但吏等竊錄姓名, 藏於郡司問者, 爲惡少所, 竊去有一吏國保年踰八十, 父子相繼錄, 私相傳云.’ 余取而觀之, 起洪武癸丑, 盡弘治己酉百有十七年, 其間事蹟, 錄有詳略, 白玄進以上不錄, 高士原以下職之來去交龜年月, 乃詳錄焉. 關國保不錄而國保所錄, 令舍弟進士仲珍謄寫以成先生案, 襲以白幅藏以黑櫝雖千百載, 繼書先生姓名, 傳之不朽. 噫! 前賢之守此郡不啻什百而賴老吏以傳, 後之君子, 無廢野史焉. 弘治紀元七年蒼龍甲寅下澣, 郡守信川康伯珍誌.”

52) “縣古新羅獐合, 創置之自靡聞, 至景德朝, 始改今名, 厥後因之, 革更附屬, 間亦不一, 而書乘無徵, 嗟夫! 邑之建置沿革, 大事也. 而尙不足徵, 況爲宰於是者, 或六期三期, 或一兩期, 或未周期, 如行旅之寄宿於傳舍, 倏忽斯須之頃, 舊者遠, 而新者又舊矣, 其名字之昧昧而無傳也, 無足怪已.”(李荇, <宜寧縣題名記 代縣監金意從作>, 『容齋集』 卷9)

이 글은 이행이 의령현감(宜寧縣監) 김의종(金意從)을 대신하여 작성한 제명기이다. 여기에는 지방관의 임기가 일정하지 않아 기록의 축적을 비롯한 지방 정책의 확립에 난점이 있다는 불만이 드러나 있다. 특히 ‘舊者遠, 而新者又舊’와 같은 표현은 지방관들이 전임자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거나 전임자의 뛰어난 정책에 대한 계승의식을 미처 가질 겨를도 없이 임기가 자주 교체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결국 지방관으로 부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단속으로 이어진다.

이 제명록에 기록된 제현을 살펴보면 재임 기간이 길거나 짧은 사람, 정사를 잘하고 잘하지 못한 사람 등 다양하다. 백성들은 어떤 분을 좋아하고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누구는 공평하고 누구는 청렴하였으며 누구는 진정으로 순리에 따라 선정을 베풀었는가? 아,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하였다. 이 책에 기록된 수령들 중에 누구든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강 군수가 이 책을 만든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장차 후임으로 부임할 군자들은 마땅히 남이 배우기를 원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겠다고 반성하는 대상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sup>53)</sup>

인용한 대목은 정구가 1586년에 지은 <함주임관제명기>의 말미이다. 여기에는 전임자들의 정치적 행적을 잘 살펴 그 가운데 계승할 부분을 계승하고, 비판하여야 할 부분은 반면교사하며 이를 자신의 통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지방관이 지역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해당 지역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추상적 업무를 반복서술하기보다는, 중앙 관청에 비해 통치 혹은 제도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지방의 연혁 및 특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지방관이야말로 제명록의 제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천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53) “卷中諸賢，居官有久近，爲政有巧拙。民孰樂於當時而不能忘於愈久邪？孰公孰廉而孰眞出於無所爲邪？噫！三人行，必有我師焉，卷中諸君，誰非可師者，康侯之爲此，未必無意。而吾與後來之君子，庶幾當爲思齊之師，毋爲內省之師云。”(鄭述，〈咸州任官題名記〉，『寒岡集』卷10)

조선 전기까지의 제명기 창작은 주로 해당 관청에 근무하게 된 개인들이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서의 제명기 창작은 이처럼 향리가 축적해온 구안(舊案)의 관행을 전면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 통치의 준거를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제도적·본격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각 지방의 읍지(邑志)가 창작되었는데 여기에 선생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명록의 재정비는 매우 시급했던 과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장에서 표를 통해 확인하였듯 조선 후기의 제명기는 대개 조선 전기와 중기 제명기의 창작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향이 현저하되, 창작의 주체와 수신 대상 양측면이 모두 사대부에서 중인층으로 확대된다는 점, 지방에 분원을 둔 관청에 대한 제명기까지 제작됨으로써<sup>54)</sup> 조선의 전 정치구성요소에 대한 제명기가 총망라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전자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우리 선왕이신 정조대왕 원년에 규장각이 설치되었다. (중략) 궁궐에 출입하고, 내구마를 타는 것을 허락받고 내부 서적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모두 무수한 특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야! 우리들은 개미나 땅강아지와 같은 천한 자 품임에도 외람되지 해와 달과 같은 임금의 여광(餘光)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금문에서 대령하거나 석거(石渠)에서 명을 받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은혜의 물결에서 목욕하며 내려주신 상금을 통해 배부를 수 있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선왕의 은사(恩賜)이다. 지조는 비록 이 몸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나, 어찌 티끌만치라도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55)</sup>

이 글은 박윤목이 1821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호헌선생안서>이다. 1781년 정조는 규장각의 서리들을 특별대우 하여 이들이 근무하

54) 대표적으로 2장의 표2 24번에 사례로 든바, 申箕善이 함흥에 분원을 둔 '분봉상사(分奉常司)'에 대해 창작한 제명기를 들 수 있다.

55) “我先王御極之元年，置奎章閣。… 至若鑾衛之出入，廐馬之許騎，內府書籍之掌其鑰鑰，皆特恩異數也。嗚呼！吾儕猥以螻蟻之賤品，獲瞻日月之餘光，待令於金門，承命於石渠，恩波乎沐浴，賞賜乎餽飫，頂踵毛髮，皆先王賜也。志雖切於蠶粉，報何有於涓埃？至今莊誦，只有清淚之被面而已。”(朴允默, <司戶軒先生案序>, 『存齋集』卷23)

는 곳에 ‘사호헌(司戶軒)’이라는 편액을 내려주고, 문한(文翰)에 대한 재주가 있는 이들을 선별할 것과 여기에 선발된 이들은 각별히 처신에도 신중할 것을 주문하였다.<sup>56)</sup> 지은이인 박윤묵 자신도 규장각 서리를 역임하며 그 영선(榮選)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제명기에서 박윤묵은 임금이 하급관리들인 자신들을 직접 발탁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다는 철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신규관청의 설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대에 이미 창작된 제명기를 계승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서얼이나 중인 등 관리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작품이 새로이 산생된 것으로 보인다.<sup>57)</sup>

#### IV. 제명기 창작의 시대적 맥락

지금까지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된 제명록과 그 서발인 제명기의 창작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통시적 변화 양상과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조선은 직제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문화를 일정 부분 계승함과 동시에 건국 직후부터 이를 차츰 극복해나가는 작업을 해나갔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조와는 다른 정치적 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상징되는 바 통치의 근간인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위계적 예제에 근간을 둔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각 관청과 직제 안에 안정적으로 이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전기에는 고려조와는 다른 인재의 명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문벌이 아닌 업무적 능력과 학식 등에 기반을 둔 이상적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명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대부 관료들의 자부심과 단결심, 자발적 추동의지가 선명하게

56) 『日省錄』 1781年(정조5) 3月 19日 기사 참고.

57) 그밖에 서형수(徐滢修)의 <역정서제명기서(掖庭署題名記序)>〔『明阜全集』 卷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시되는 한편 이를 통해 조선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 제명기의 주제의식은 권근이 지은 <상대별곡(霜臺別曲)>과 같은 악장(樂章) 창작의 주제의식과 상통하는 면모가 없지 않다. <상대별곡>류 악장은 임금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체재내적 성원들끼리 함께 즐기며 이념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대별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명량상우(明良相遇)’ 즉 자신들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임금을 만난 기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별곡>의 앞부분에서 사헌부의 정치적 기강 확립,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태평성대를 이룩하겠다는 장관이 집적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sup>58)</sup> 권근이 <상대별곡>의 창작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으로서의 자긍심을 표출하고, 유교의 이상적 질서에 따라 국가를 태평성대로 이끌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sup>59)</sup> 그리고 감찰계를 조직하여 후대까지 집단적 교유를 지속하는 등 벼슬살이의 공동 체험에서 비롯된 사대부의 집단적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점<sup>60)</sup>을 고려할 때, 제명록 제작 역시 정치적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히 조선전기에 집중 산생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문학 장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명기는 사대부 관료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각 관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어진 직분 안에서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계서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제명기에는 왕화를 보좌하고 국가의 정치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개별 신료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강조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낮은 직급의 실무진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정 개인의 공헌과 승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조화와 자발적 헌신을 통해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명기는 관청의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통합된 목표-왕화의 보좌-를

58) 조규익, 『鮮初樂章文學研究』,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85~87면.

59) 조규익, 위의 책, 177~178면.

60) 최재남, 「경기체가 수용의 현실적 기반과 서정의 범주」, 『한국문학논총』 제24집, 한국문화회, 1999, 67~68면.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후대인들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각자의 행동을 조절할 중요한 가치와 행동 규범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그 범위가 지방으로까지 확장되는 한편, 후기에는 창작 대상이 중인층으로 확대된 것 또한 특징적 국면 가운데 하나이다.

제명기는 지금까지 문학적 분석의 대상이 거의 되지 못했다. 관각문인들이 정치적 실용을 가장 중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61)</sup> 제명기는 관료사회의 위계적 질서 확립과 실무 관료 및 대신들이 공히 가져야 할 엄중한 책무의식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각문학적 성격을 농후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의식의 차원에서도 법전 등으로 미처 규정할 수 없었던 각 관청의 정치적 공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부 관원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관각문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조선 건국 이후 성종대까지 사적 계회와 공적 제명기 창작이 동시에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정치적 현상이다. 계회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현임자들 상호간에 굳건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평생의 환로에 걸쳐 인연을 이어나갈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제명기는 계회보다는 감정적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대신 엄중하고도 경건한 책임감 등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에 공적·사적 측면에서 관청의 제명기 창작과 사적 계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료간 유대의식 내지 동류의식이 강화되는 한편, 조직 내부를 보다 공교하게 정비하여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조선 전기에는 제명기를 통해 공적으로는 엄격한 위계와 직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적 친밀을 도모함으로써 공사 양측에서 완전하게 결집된 견고한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제명기는 위계적 질서에 입각한 정명 사상을 바탕으로 ‘士’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대부 주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각 개인이 정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61) 신복호, 앞의 논문, 33~36면.

다함으로써 정치적 질서가 완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명기는 단순히 관료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추적해 나가려는 의도를 넘어, 제작 자체가 하나의 제도이자 문학적 결과물로서 고려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산생될 수밖에 없었던 장르인 셈이다. 조선조 전체를 걸쳐 제명기의 변화 양상을 거칠게나마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이번 작업은 그러한 점에서 다소나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經國大典』

『高麗史』

한국문집총간 DB

### 2. 단행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한양의 탄생』, 글항아리, 2015.

이수건, 『증보 경상도선생안』, 국학진흥원, 2005.

조규익, 『鮮初樂章文學研究』,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한충희,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3. 논문

나영훈, 『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41~98면.

도현철, 『《經濟文鑑》의 引用典據로 본 鄭道傳의 政治思想』, 『역사학보』 제165집, 역사학회, 2000, 69~102면.

송웅섭, 『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89면.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53~80면.

윤진영, 『藏書閣 所藏의 『館伴題名帖』』, 『장서각』 제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169~198면.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1~496면.

이범학, 『司馬光의 「正名」 思想과 人治主義의 展開』, 『동양사학연구』 제37집, 동양사학회, 1991, 139~184면.

이은주, 『조선 초기 '新都八景' 詩의 제작과 성격』, 『한국한시연구』 제22집, 한국한시학회, 2014, 67~96면.

이종목,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한국시가연구』 제9집, 한국시가학회, 2011, 5~28면.

-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통시적 의미-‘태조-성종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27집, 국제어문학회, 2003, 37~66면.
- 조규익, 『계층화의 명분과 기득권 수호 의지-鮮初樂章의 이중성』,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5~63면.
- 채웅석, 『고려 중·후기 기로회와 개경 사대부 사회』, 『역사와 현실』 제79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63~102면.
- 최재남, 『경기체가 수용의 현실적 기반과 서정의 범주』, 『韓國文學論叢』 제24집, 한국문학회, 1999, 59~90면.
- 한중희, 『朝鮮初期 議政府舍人·檢詳의 官人的 地位』, 『역사교육논집』 제13·14합집, 역사교육학회, 1990, 523~557면.
- 홍선표,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제36집, 한국미술연구소, 2013, 7~31면.
- 梅華, 『宋代題名記의傳承與發展』, 『西北大學學報』 43-6, 哲學社會科學版, 2013, 110~113頁.
- 王曉驪 『宋代題名與題名記考論』, 『北京社會科學』 2016-2, 北京市社會科學院, 2016, 70~75頁.

On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list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preface(序跋) and the statement(記文)

Koo, Seul-Ah

This paper is a new attempt to read the creation traditions and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list(*Ti ming-Ji*, 題名記)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of the time in the Joseon Dynasty. In contrast to the private association of the bureaucrats, *Ti ming-Ji* is the official record of former and present government officials. And it emphasizes collective identity as bureaucrats.

In order to grasp the contextual context, I first surveyed the present state of creation of *Ti ming-Ji* during the entire period of Joseon and listed it in the order of the times. And that the genre source is in the *Ti ming-Ji* of the Song and Won(宋元) Dynasty.

There are two main aspects of the change. First in Early Joseon, it is emphasized that the Joseon dynasty secured new talents based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in order to overcome the Emperor of the Goryeo period and to succeed the transplantation of the Joseon political order. This means that the adjustment is precise and accurate. It is also a pride that Joseon's politics has already established a rational system. In particular, senior bureaucrats encouraged lower-level officials to recognize the historical evaluation, and if they supported the king, they would be rewarded through promotion. This is characterized by a sense of systematic order that drives the self-control and growth of new officials.

After the middle of the Joseon, it is emphasized that damaged records should be restored and rebuilt through the war. It also shows a tendency to record the repair process in detail. And as the central government's maintenance has been completed, the literary subject is changed by local government. In this process, it emphasizes the political commitment that the leaders should play a role in fully communicating the edification of wages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creation of *Ti ming-Ji* until the Joseon dynasty was made mainly by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individuals who worked at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mid-Joseon Dynasty, the making of the *Ti ming-Ji* in the province tends to be made in earnest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to secure the standard of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revising the practice of the old one.

Lastly, in the late-Joseon, there is a tendency to inherit the creation traditions of early Chosun and the Middle Age. And both the object of creation and the object of reception were expanded from gentry to the middle class.

*Ti ming-Ji* emphasizes the identity of 'politician', especially based on hierarchical order. In addition, it reveals that the political order must be fully operated by each individual position at a given location. Therefore, the production of the *Ti ming-Ji* is a characteristic genre that was inevitably preval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olitical order by Joseon Dynasty.

keywords: government official's list(*Ti ming-Ji*, 題名記), Hierarchy, accumulation of the record, Political order.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